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9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401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3. 8.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695,9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669,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4. [redacted]구 B에 있는 C건물 제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 2억 7,000만 원에 대한 취득세 1,080만 원, 농어촌특별세 54만 원, 지방교육세 108만 원 합계 1,242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8. 1. 4. 과세표준 42,805,000원에 대한 취득세 856,100원, 농어촌특별세 85,610원 합계 941,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E'(이후 'F'으로 변경)이라는 업소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접객원을 두는 유흥주점 영업장소인데, 객실의 면적이 60.054㎡로서 영업장 전용면적인 110.71㎡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취득 후 5년 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8. 6. 14.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312,805,000원에 대한 취득세 31,320,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631,550원(가산세 포함) 합계 33,952,08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14. [redacted]광역시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redacted]광역시장은 2018. 7. 24.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게 취득세 31,695,9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669,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9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공사 당시 객실의 면적 합계를 53.8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고는 객실의 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 공용기둥의 면적까지 객실의 면적에 포함시키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객실의 면적이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8.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사용 객실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실제 사용 객실 4개의 면적 합계가 60.054㎡(5호 24.681㎡, 6호 13.310㎡, 7호 9.796㎡, 8호 12.267㎡)로서 이 사건 부동산 전용면적인 110.71㎡의 100분의 50 이상이었는데, 위 공무원은 출장복명서의 측정방법 란에 '레이저 측정기 이용 내부 중심선 측정'이라고 기재하였다.

2) 그런데 위 측정 이후 원고의 재측정 요구에 따라 피고가 2018. 6. 1.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측정한 결과 5호 객실의 면적이 19.074㎡로 줄어들어 객실의 면적 합계가 54.447㎡로 측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8. 5. 31. 5호 객실에 공사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9

시행한바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을 하자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7. 11. 21. 현지에 출장하여 시설 및 설비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출장복명서(을 제6호증의 1)에 객실의 면적을 68.4㎡로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2017. 11. 22.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 작성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제4호증)에도 객실의 면적이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하여 벽면의 내부 중심선을 기준으로 객실의 면적을 측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측정방법에 잘못이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세무공무원이 공용기둥의 면적까지 포함시키는 등 측정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2018. 5. 30. 측정 결과 객실의 면적 합계가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중과요건에 해당하게 되자 2018. 5. 31. 5호 객실의 축소공사를 한 다음 재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원래 객실의 면적 합계가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었고 2018. 5. 31. 객실 면적과 무관한 훼손된 타일 복구 등의 공사만을 하였다는 취지의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은 진술인과 원고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믿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객실의 면적이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9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예영

판사 임진수

판사 강태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9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9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